

환경부 공고 제 2013-6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년 12월 26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제작자 차기 ('16~'25)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허용기준(Fleet Average System) 적용기준이 '15년 만료됨에 따라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2) 인증시험 시 기존 시험모드(CVS-75)에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SFTP, HWFET 모드)를 추가하여 인증 조건을 강화함
- 3) 입자상^을질 배출허용기준을 전 차종으로 확대함

나.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안 제71조의3, 별표 19의2, 별표 19의3)

- 1) '16~'25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산정방법을 정함
- 2)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규제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기간을 조정함

다.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자동차 사용기간 증가, 제작자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차기 기준 적용 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

환경부 공고 제 2013-648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3년 12월 19일 /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 총회('10)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 의정서"라 한다) 가 채택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도모하고,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4조)

- (1) 이 법률은 의정서 발효 이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적용함
- (2) 인간유전자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및 남극지역의 유전자원, 상품으로서의 유전자원, 다른 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은 제외
- (3)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함

나.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안 제8조)

- (1)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 다만, 기존 법률에 따라 접근 허가 또는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유(안 제9조)

- (1)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익공유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감독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라. 사전 접근 · 이용 금지 및 비상조치(안 제10조~제11조)

- (1)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한 간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의무 준수 점검 및 권고(안 제13조~제15조)

- (1) 해외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따라야 함
- (2) 해외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접근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접근과 이익 공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3)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관리 센터(안 제16조)

- (1) 정부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관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음

환경부 공고 제 2013-64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년 12월 17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에 한한다)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